

제118회 창원시의회 (제1차 정례회)  
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 [2022. 9. 28.(수)]

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  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#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9. 28.  
문화환경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: 2022. 7. 13.

정순욱·김경희·김남수·김묘정·김상현·문순규  
박해정·백승규·오은옥·이우완·이원주·이해련  
정길상·진형익 의원(14명)

나. 회 부 일 자: 2022. 7. 13.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 제118회 창원시의회(제1차 정례회) 개회 중  
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(2022.9.28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정순욱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중·소형 판매시설의 신축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주민에게 좀 더 편리한 유통환경을 제공하고, 주거지역 내 침체 되어 가는 유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추가  
(안 별표 3, 별표 4, 별표 5)

가. 참고사항

- 신·구 별표 대비표

- 관계 법령
- 현행 조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(전문위원 박선희)

#### □ 개정 배경(필요성)

- 2010년 통합 이후 창원시의 인구 구조, 삶의 질, 경제 여건 등 여러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례 개정을 추진.

#### 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##### ○ 안 별표 3, 4, 5는

-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(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) 관련 별표4, 5, 6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허용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을 확대하는 사항임.

#### □ 종합의견

- 금회 조례개정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내용 중 통합 전부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한된 판매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한 범위내 일부 개정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으며, 통합 이후 재건축, 재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로 인해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판매시설 허용 범위 확대 검토는 필요하나 허용범위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다양한 과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 생략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 : 없음
6. 심사결과 : **부결**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